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(개정전) 인명구조전 관리운용 규정
- (개정후) 119구조전 관리운용 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-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조전대의 편성·운영 근거 마련 등 일부개정·시행에 따른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관련법령 준수 및 119구조전교육대 및 119구조전 운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규정 제명 "119구조전 관리운용 규정"으로 변경함
- 나.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"인명구조전센터"를 "119구조전교육대"로 하고, "인명구조전센터장"을 "119구조전교육대장"으로 하며 "인명구조전"을 "119구조전"으로 각각 전부 변경함
- 다. 119구조전 등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화·명확화 함.

◇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기 타 : 개정본문 별첨